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6116-838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5.08.(목)	2025.05.19.(월)	2025.05.20.(화)	2025.05.21.(수)	2025.05.27.(화)	2025.05.29.(목) ~ 2025.06.07.(토)	2025.06.09.(월) ~ 2025.06.11.(수)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4.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02-6116-838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의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청약자격 및 분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 등으로 인해 다소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하는 청약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격 서류 접수 사전 방문 예약제 운영 안내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접수, 공급계약 체결 등은 사전 방문 예약제로 진행 예정이며, 예약방법 등은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gocheok/>)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gocheok/>)를 통해 분양 일정 안내, 청약자격 안내, 상품 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건본주택의 내부 여건, 방문 현황, 운영 여건에 따라 건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gocheok/>)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 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특별공급/1.2순위)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08.(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5.19.(월)	2025.05.20.(화)	2025.05.21.(수)	2025.05.27.(화)	2025.05.29.(목) ~ 2025.06.07.(토)	2025.06.09.(월) ~ 2025.06.11.(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09:00 ~ 17:30)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 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 할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와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2025.04.2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 3942호 (2025.05.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대[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983세대[조합원 259세대(보류지 6세대 포함), 임대 148세대] 중 일반분양 576세대 중 [특별공급 314세대(기관추천 57세대, 다자녀가구 57세대, 신혼부부 132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5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 세대수)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인허가 기준주택형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64	01	059.9816A	59A	59A	59.9816	23.1549	83.1365	51.9575	135.0940	31.1400	25	1	4	3	2	3	13	12	1
	02	059.9969B	59B	59B	59.9969	22.6669	82.6638	51.9706	134.6344	30.9600	335	45	27	89	1	31	193	142	14
	03	059.9509C	59C	59C	59.9509	23.3411	83.2920	51.9309	135.2229	31.1900	88	1	4	18	4	14	41	47	4
	04	059.9689D	59D	59D	59.9689	22.9776	82.9465	51.9465	134.8930	31.0600	4	-	-	-	-	-	-	4	1
	05	084.9349A	84A	84A	84.9349	25.7876	110.7225	73.5726	184.2951	41.4600	110	10	22	22	10	3	67	43	13
	06	084.9471B	84B	84B-1	84.9471	25.6472	110.5943	73.5831	184.1774	41.4200	10	-	-	-	-	-	-	10	1
	07	084.8751C	84C	84B-2	84.8751	25.7992	110.6743	73.5208	184.1951	41.4500	4	-	-	-	-	-	-	4	-
합 계											576	57	57	132	17	51	314	262	34

※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84B-1, 84B-2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 단위세대 표기 84B, 84C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타입 중 인허가 도서상 84B-1 주택형은 84B형, 84B-2 주택형은 84C형으로 구분하여 분양예정이오니 계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서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 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조합의 계획 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및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형은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 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한 바 청약시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약식표기는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의 표시 방식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해당(동)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 급 금 액			계 약 금 (10%)		중 도 금 (60%)						잔 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1개월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자정일		
										2025-11-30	2026-05-31	2026-10-31	2027-03-31	2027-08-31	2028-01-31			
59A	25	103동 1호 106동 3호 109동 3호	2층	1	483,830,040	473,869,960	957,700,000	10,000,000	85,770,000	95,770,000	95,770,000	95,770,000	95,770,000	95,770,000	95,770,000	287,310,000		
			3층	1	488,932,560	478,867,440	967,800,000	10,000,000	86,780,000	96,780,000	96,780,000	96,780,000	96,780,000	96,780,000	96,780,000	290,340,000		
			4층	1	493,984,560	483,815,440	977,800,000	10,000,000	8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293,340,000		
			5-10층	18	499,087,080	488,812,920	987,900,000	10,000,000	88,790,000	98,790,000	98,790,000	98,790,000	98,790,000	98,790,000	98,790,000	296,370,000		
			11-20층	4	504,189,600	493,810,400	998,000,000	10,000,000	89,800,000	99,800,000	99,800,000	99,800,000	99,800,000	99,800,000	99,800,000	299,400,000		
59B	335	101동 9호,10호 103동 3호 104동 1호,2호 106동 5호,6호 107동 1호,2호,3호,4호 108동 3호,4호,5호 109동 5호,6호	2층	13	466,047,000	456,453,000	922,500,000	10,000,000	8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92,250,000	276,750,000		
			3층	15	470,947,440	461,252,560	932,200,000	10,000,000	8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93,220,000	279,660,000		
			4층	16	475,898,400	466,101,600	942,000,000	10,000,000	8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282,600,000		
			5-10층	96	480,798,840	470,901,160	951,700,000	10,000,000	8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95,170,000	285,510,000		
			11-20층	160	485,699,280	475,700,720	961,400,000	10,000,000	8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96,140,000	288,420,000		
			21층 이상	33	490,599,720	480,500,280	971,100,000	10,000,000	87,110,000	97,110,000	97,110,000	97,110,000	97,110,000	97,110,000	97,110,000	291,330,000		
			107동 4호	2층	1	459,075,240	449,624,760	908,700,000	10,000,000	80,87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272,610,000	
				3층	1	463,925,160	454,374,840	918,300,000	10,000,000	81,830,000	91,830,000	91,830,000	91,830,000	91,830,000	91,830,000	91,830,000	275,490,000	
		59C	88	103동 2호 106동 4호 108동 2호 109동 4호	2층	4	464,885,040	455,314,960	920,200,000	10,000,000	8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92,020,000	276,060,000
					3층	4	469,785,480	460,114,520	929,900,000	10,000,000	82,990,000	92,990,000	92,990,000	92,990,000	92,990,000	92,990,000	92,990,000	278,970,000
4층	4				474,685,920	464,914,080	939,600,000	10,000,000	8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281,880,000		
5-10층	24				479,586,360	469,713,640	949,300,000	10,000,000	84,930,000	94,930,000	94,930,000	94,930,000	94,930,000	94,930,000	94,930,000	284,790,000		
11-20층	40				484,436,280	474,463,720	958,900,000	10,000,000	85,890,000	95,890,000	95,890,000	95,890,000	95,890,000	95,890,000	95,890,000	287,670,000		
21층 이상	12				489,336,720	479,263,280	968,600,000	10,000,000	86,860,000	96,860,000	96,860,000	96,860,000	96,860,000	96,860,000	96,860,000	290,580,000		
59D	4	108동 1호	2층	1	490,953,360	480,846,640	971,800,000	10,000,000	87,180,000	97,180,000	97,180,000	97,180,000	97,180,000	97,180,000	291,540,000			
			3층	1	496,106,400	485,893,600	982,000,000	10,000,000	8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294,600,000			
			4층	1	501,259,440	490,940,560	992,200,000	10,000,000	8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99,220,000	297,660,000			
			5-10층	1	506,412,480	495,987,520	1,002,400,000	10,000,000	90,240,000	100,240,000	100,240,000	100,240,000	100,240,000	100,240,000	100,240,000	300,720,000		
84A	110	102동 1호,2호 103동 4호,5호 104동 3호,4호 105동 1호,3호,4호 106동 1호,2호 109동 1호,2호	2층	12	607,553,520	595,046,480	1,202,600,000	10,000,000	110,260,000	120,260,000	120,260,000	120,260,000	120,260,000	120,260,000	120,260,000	360,780,000		
			3층	13	613,919,040	601,280,960	1,215,200,000	10,000,000	11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364,560,000		
			4층	13	620,335,080	607,564,920	1,227,900,000	10,000,000	11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122,790,000	368,370,000		
			5-10층	72	626,751,120	613,848,880	1,240,600,000	10,000,000	11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124,060,000	372,180,000		
84B	10	105동 2호	2층	1	588,810,600	576,689,400	1,165,500,000	10,000,000	10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349,650,000			
			3층	1	595,024,560	582,775,440	1,177,800,000	10,000,000	107,780,000	117,780,000	117,780,000	117,780,000	117,780,000	117,780,000	353,340,000			
			4층	1	601,188,000	588,812,000	1,190,000,000	10,000,000	10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357,000,000			
			5-10층	2	607,401,960	594,898,040	1,202,300,000	10,000,000	110,230,000	120,230,000	120,230,000	120,230,000	120,230,000	120,230,000	360,690,000			
			11-20층	5	613,615,920	600,984,080	1,214,600,000	10,000,000	111,460,000	121,460,000	121,460,000	121,460,000	121,460,000	121,460,000	364,380,000			
84C	4	105동 2호	5-10층	4	607,856,640	595,343,360	1,203,200,000	10,000,000	11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360,96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물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통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025.02.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기타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점자(동일 주택형의 한함)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의 주택형별 낙점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예비 순번을 부여 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점자 모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장기복부 제대군인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자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1순위)현역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의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 ②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계</td><td>100</td><td></td><td>100</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 <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5.08.(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 공급, 우선 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 공급, 일반 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 10,087,437원	8,578,089원 ~ 12,009,323원	9,031,049원 ~ 12,643,467원	9,733,087원 ~ 13,626,320원	10,435,125원 ~ 14,609,174원	11,137,163원 ~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 11,528,499원	10,293,707원 ~ 13,724,941원	10,837,259원 ~ 14,449,677원	11,679,704원 ~ 15,572,938원	12,522,150원 ~ 16,696,198원	13,364,595원 ~ 17,819,459원
추첨 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 소득) 소득 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 증명 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 기간(사업자 등록 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 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 가액 산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 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60호(2025.03.31.)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60호(2025.03.31.)] [별표 3])**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구분	내용
----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름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구분 (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함께 제출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6호(2024.03.25.)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6호(2024.03.25.) [별표 3])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②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됩니다.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③분양권 입주권은 공급규칙(2018.12.11.)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구분

검색대상

주택의 범위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내용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예비입주자)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5.05.27.(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5.29.(목)~2025.06.07.(토) (10:00~17:00) • 장소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자격검증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 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서류 제출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일시 : 2025.06.09.(월)~2025.06.11.(수) (10:00~17:00) • 장소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사전 방문예약제를 통한 건본주택 방문(10:00 ~ 17:00)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 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5.27.(화) ~ 2025.06.0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5.2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 2025.05.29.(목) ~ 2025.06.07.(토) 10:00~17:00까지(※ 사전 방문예약제를 통한 건본주택 방문 접수)
대상자	• 특별공급/일반(1, 2순위) 공급 정당당첨자, (예비입주자 일정 별도 통보 예정)
제출 장소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건본주택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자격검증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운영에 따라 사전 방문 예약제 운영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도 서류 접수 및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유형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전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소득 등)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 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gocheok/>)를 통해 '사전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건본주택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 서류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자격검증 서류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해당 기간이 경과 시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 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 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서류 미제출 시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일정	서류 제출 및 검증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025.05.29.(목) ~ 2025.06.07.(토) 10:00~17:00까지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건본주택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 T.02-6116-8383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대상자 별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 일정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구비 서류(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

-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공통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 입주자)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생략 ※ 단,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특별공급신청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는 생략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무주택서약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준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확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직계존비속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신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비속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 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 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로 발급
		○	임신진단서또는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국내 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 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와 혼인전 출생자녀를 혼인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 코드번호, 담당 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 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시“신고 사실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소득기준은 초과 하나,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시(주민)등록 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제출서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자격요건확인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등)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인증 서류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 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제출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1년이상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비사업자확인 각서 제출시"신고 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
				대상자녀	•신생아 우선 공급인경 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 사명,의료기관등록 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 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당사 주택 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 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 결과) ※발급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제출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 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성명 등 전부 표기
	○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 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경우 (3년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 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위한 경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 자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30세이상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설정하여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파양가족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계약 위임용.(본인서명사실 확인으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의 공증) 제출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 입주자)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단,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전 서류 포함)
		○		피부양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미만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 명시)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국내 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 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 정불인정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지 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추가제출할수있음)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산정기준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계존속	•피부양직계 존속을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 부 확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제외 /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 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고자 하는경우 (성명,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이상의 직계 비속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 확인여부(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상세"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30세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 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30세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한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당첨 사실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신청자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산입(1~3점)한 경우,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 기간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발급 *(청약홈)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가입은행)참구방문>청약통장가입확인용순위확인서발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계약 위임용(본인 서명사실확인으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의 공증) 제출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따른 해당 서류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홈택스), 해당직장
	금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자 : 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호봉인 직급자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필수)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 가입자]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 확인) ③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미가입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③ 국민연금공단/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전년도 재무제표 ⑤ 원천징수이행명세서(또는 배당금 지급 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③, ④ 세무서 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해당년도 간이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수입 발생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 비치	① 견본주택

②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세무서
---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공개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원천징수영수증 포함)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제청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원본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제청 홈택스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 직인 날인 필수입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1, 2023년에 소득세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제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세 납부 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 안내 > 조회/발급>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외 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청약자 본인 및 전 세대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견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전 세대원 조회내역 확인)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요청)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아래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5.06.09.(월)~2025.06.11.(수) 10:00~17:00 3일간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건본주택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한 타입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경쟁 미달 타입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 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소득 기준이내 등 확인)
-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제한 등)이 발생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 접수 시 필수 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증 ※ 건본주택 현금(수표) 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 분 제외) 등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기 제출한 경우 제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계약 가능,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이름정자 서명으로 대체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50%씩 균등 부담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계약 시 당사 건본주택에서 출력됨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동산거래신고가액 6억원 이상의 경우 ※ 당사 홈페이지 게재 및 건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최초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납부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인지세 미납으로 간주되오니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수입인지 납부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매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매수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증서)
납부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중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중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757101-04-191355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2명)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세대별 가상 계좌번호 부여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2명)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중도금 및 잔금 : 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KB국민은행, 757101-04-191355,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2명))으로 관리됩니다.
-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 직전 대출이자 납주일 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대출 유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중도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납입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또한,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미납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함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납부한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사업주체에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 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안내 및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및 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은 최초 당점차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 등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 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정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VAT 포함)

타입	59A	59B	59C	59D	84A	84B	84C
금액	13,420,000	11,670,000	11,740,000	15,090,000	13,370,000	13,700,000	13,690,000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부위 마감 연장, 거실/주방 우물천장, 전동 빨래 건조대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 본인이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 분할 규격 및 입면 디자인,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냉매 배관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부분(예를 들어 안방 발코니 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월패드, 화재감지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 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벽/바닥 마감재 특화, 주방 스타일링 특화, 주방특화 및 수납특화옵션, 가전류 등)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내 기본형(무상) 내용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1) 라이프업 스타일링

■ 현관중문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현관중문	전 타입	미설치	3연동 현관 중문	59A/B/C	1,010,000	
				59D/84A /84B/84C	1,020,000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등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공간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3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설치품목	금 액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 타입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 (섬유판)	59A	벽 : 흡착벽지 바닥 : 광폭 강마루 (섬유판)	1,510,000	벽 : 흡착벽지 바닥 : 원목마루	8,730,000	
			59B		1,380,000		8,350,000	
			59C		1,380,000		8,380,000	
			59D		1,600,000		9,370,000	
			84A		1,880,000		11,100,000	
			84B		1,770,000		10,870,000	
			84C		1,770,000		10,870,000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은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및 옵션형(3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형(2안/3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조명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조명 특화	전 타입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59A	거실, 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890,000	
			59B		890,000	
			59C		890,000	
			59D		890,000	
			84A	거실, 침실2,3,알파룸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1,210,000	
				거실, 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980,000	
			84B	거실, 침실2,3,알파룸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1,170,000	
				거실, 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950,000	
			84C	거실, 침실2,3,알파룸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1,170,000	
				거실, 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 고급형 스위치	950,000	

-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조명기구는 유상 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을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유상 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 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 부분만 제공됩니다.
- 평면선택 옵션/유상 선택 옵션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 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 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주방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 마이크와의 거리 및 방향에 따라 음성인식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內 안내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

■ 현관수납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현관 수납특화	59A	기본 신발장	59A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디자인선반(조명포함) 은경판넬	980,000	
	59B		59B		940,000	
	59C		59C		870,000	
	59D		59D		980,000	
	84A	기본 신발장 현관창고 : 가구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84A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디자인선반(조명포함) 현관창고 특화 : 풀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970,000	
	84B		84B		930,000	
	84C		84C		930,000	

- 현관수납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드레스룸 특화	59A	파우더장 + 드레스룸(가구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59A	드레스룸 통합 : 포켓도어+디자인 시스템 선반+천장형 제습기	2,500,000	
	59D		59D		3,390,000	
	84A		84A		2,240,000	
	84B		84B		2,610,000	
	84C		84C		2,610,000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 (코스텔, CDD-600B)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선반 구성 및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는 별도 유상 선택 가능합니다.(**빌트인 가전 옵션 : 천장형 제습기**)
- 천정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침실1에 속한 드레스룸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지정된 위치 외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 불가합니다.

■ 침실3 수납특화 (대형 드레스룸)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침실3 수납특화	59B	침실3	59B	슬라이딩 도어 + 디자인 시스템 선반 + 천장형 제습기	4,870,000	

- * 침실3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침실 내부 벽체는 도배지로 마감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침실3 수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코스텔/CDD-600B)
- * 침실3 수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침실2 수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점검구의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침실3 수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포함)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알파룸 수납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알파룸 수납특화	84B	알파룸	84B	침실2 드레스룸+복도 팬트리(폴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	3,650,000	
	84C		84C		3,650,000	

■ 침실2/3 불박이장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침실2/3 불박이장	전타입	미설치	59A	침실 불박이장 1개소	1,170,000	설치 위치: 침실3
			59B		1,170,000	설치 위치: 침실2
			59C		1,170,000	설치 위치: 침실3
			59D		1,170,000	설치 위치: 침실3
			84A		1,170,000	설치 위치: 침실2
			84B		1,170,000	*발코니 변화구가 세대 - 침실3
			84C		1,170,000	설치 위치: 침실3
						설치 위치: 침실2

- 침실2/3 불박이장은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사이즈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은 일부세대에 발코니 변화 구간이 적용됨에 따라 불박이장의 설치 위치가 침실2 또는 침실3으로 상이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 라이프업 키친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주방 스타일링 특화	전타입	주방 벽 : 타일 (300*600)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59A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2,100,000	
			59B		2,090,000	
			59C		2,110,000	
			59D		2,180,000	
			84A		2,170,000	
			84B		2,060,000	
			84C		2,060,000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은 타입별로 조명의 사이즈와 점검구 및 스위치의 설치 위치와 수량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 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통신 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 주방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주방특화	59B	평면 : 주방 주방 벽 : 타일 (300*600)	59B	평면 : 주방+장식장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3,920,000	
	59C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59C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3,390,000	
	84A	평면 : 주방+알파룸 주방 벽 : 타일 (300*600)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84A	평면 : 주방+주방팬트리+장식장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7,000,000	
	84B	평면 : 주방 주방 벽 : 타일 (300*600)	84B	평면 : 주방+장식장 주방 벽 : 엔지니어드스톤	3,450,000	
	84C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TV(10인치)	84C	싱크 수전 : 외산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TV(13인치)	3,450,000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은 타입별로 조명의 사이즈와 점검구 및 스위치의 설치 위치와 수량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 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통신 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 주방 냉장고장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주방냉장고장	59A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59A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5,390,000	
	59B		59B		5,390,000	
	59C		59C		5,390,000	
	59D		59D		5,380,000	
	84A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84A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김치) + 키큰장	5,150,000	
	84B		84B		5,260,000	
	84C		84C		5,260,000	

- 빌트인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는 LG전자 (BC4S1AA1+BC3K1AA1) 제품이 설치됩니다.
-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는 LG전자 냉장고(BC1L1AA1), 냉동고(BC1F1AA), 김치냉장고(BC1K1AA1)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4도어 냉장고,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건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주방 냉장고 상부장 및 키큰장의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라이프업 바스

■ 욕실특화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타입	2안 - 옵션형(유상)		3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설치품목	금 액	
욕실특화	전 타입	벽 : 타일(300*600/국산) 바닥 : 타일(300*300/국산) 벽붙이형 세면대	59A	벽 : 타일(600*1200/외산)	2,900,000	벽 : 타일(600*600/외산)	2,640,000	
			59B	바닥 : 타일(300*600/외산)	2,900,000	바닥 : 타일(300*300/외산)	2,640,000	
			59C	욕조 측면 타일 마감	2,900,000	욕조 측면 타일 마감	2,640,000	
			59D	외산 세면대	2,900,000	외산 세면대	2,640,000	
			84A	수전,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2,950,000	수전,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프레임	2,690,000	
			84B	프레임 색상 특화	2,950,000	색상 특화	2,690,000	
			84C	전자비데 1개소	2,950,000	전자비데 1개소	2,690,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및 옵션형(3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 타일 규격에 따라 배수구의 형태 및 규격이 상이합니다.
- 욕실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1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시 세면기(파포니 / PAL-7320H), 세면기수전,욕조수전,샤워수전,수건걸이,휴지걸이,코너선반,수건선반 색상특화(무광니켈) 제품이 설치 됩니다.

5) 가전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1안 - 기본형(무상)	2안 - 옵션형(유상)		비 고
		설치품목	설치품목	금 액	
인덕션	전타입	가스쿡탑 3구 (하츠 / SSGC-3605SABH)	인덕션 3구 (쿡첸/ CEN-IF3A0NBA)	650,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수납장	일반형 (삼성전자 / DW80F73Y1UEW)	1,100,000	
			고급형 (삼성전자 / DW80F75K1UAP)	1,400,000	
전기오븐	전타입	수납장	일반형 (LG전자 / MZ385EBT1)	450,000	
			고급형 (LG전자 / MZ941CLCAT)	850,000	
욕실복합 환풍기	전타입	미설치	2개소 (힘펠 / FHD3-C150P MT)	1,200,000	2대(욕실1, 욕실2)
드레스룸 제습기	59A,D 84A,B,C	미설치	코스텔 / CDD-600B	780,000	

- 인덕션 유상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 (하츠 : SSGC-3605SABH)이 설치 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형(2안-인덕션 3구) 선택 시에는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의 전면 패널의 마감재는 일반형 : 에센셜화이트, 고급형 : 새틴화이트로 설치되며, 패널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기본형(1안) 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코스텔 (CDD-600B)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미 선택 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부 주택형에 한함)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되어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침실1에 속한 드레스룸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지정된 위치 외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6)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 LG전자)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옵션안	장비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 고
59A,D	1안	2대	거실 + 침실1	2,80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400,000	
59B	1안	2대	거실 + 침실1	2,800,000	

59C	2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4,100,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시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400,000	
	1안	2대	거실 + 침실1	2,800,000	
84A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400,000	
	1안	2대	거실 + 침실1	3,200,000	
	2안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4,400,000	주방 특화 선택시
	3-1안	5대	거실 + 알파룸 + 침실1 + 침실2 + 침실3	6,900,000	
84B, C	3-2안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6,900,000	주방 특화 선택시
	1안	2대	거실 + 침실1	3,20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알파룸 수납 선택시
	3안	5대	거실 + 알파룸 + 침실1 + 침실2 + 침실3	6,90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은 실내기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 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시스템 청정환기 특화 (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옵션안	장비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 고
59A,D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59B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2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2,960,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시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59C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84A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주방특화 선택시
	3안	5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4,920,000	
84B, C	1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リモコン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リモコン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상기 설치 위치 외에는 설치가 불가 합니다.

■ 유의사항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마트 스위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된 위치 외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금액은 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기본 마감과의 차액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 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 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 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품목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소음, 진동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온/오프라인 판매가는 계약 시점과 입주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 외 판매되는 옵션의 경우 시공사(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와는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안내

(단위: 원, VAT 포함)

계좌구분	납부 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주택형별 정액제)	7,000,000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에는 유상옵션 대금 총액의 10%)	KB국민은행	757101-04-191397	(주)대우건설(외1사)
잔금	유상옵션 대금 총액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KB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주)대우건설(외1사)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잔금은 모계좌(KB국민은행, 757101-04-191397, (주)대우건설(외1사))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 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가격은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별도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 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이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구분	내용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59B, 84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및 터치모니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 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 바닥은 외부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품목, 유상 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유상 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일부 세대는 유상 옵션 미선택 시 제품품목, 조명, 스위치, 배선기구 등의 위치,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 형태 및 가구 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 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지 주변 도로 및 지형(경사 포함)은 일부 간소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 도로와 교통 시설물 등은 인허가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전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우,오수 배관, 욕실 및 다용도실의 바닥배수구의 제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용 제품으로, 실제 시공 시에는 제조사 및 마감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단지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는 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홈페이지,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옥상구조물의 형태, 입면색채, 경관조명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지자체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 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 시공 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홈페이지,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는 각종 홍보물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 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분양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VR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 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상에 견본주택을 VR촬영한 e-모델하우스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 사정에 따라 분양홈페이지와 함께 폐쇄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에 사용된 주동 입면디자인, 색채, 옥상구조물 등의 마감재, 색상 및 형태, 조경, 커뮤니티, 경관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분양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경관조명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분양안내, 홈페이지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터널),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내 사인물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견본주택의 사인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 및 공원 등은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과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착공 및 분양 이후, 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레벨 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 사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예정입니다. - 예정된 입주시기는 준공 승인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 정비기반시설(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등) 등이 건축시설의 준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교통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 본 아파트 입주 시점의 초·중·고등학교 배정은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는 고척초등학교(예정), 고척중학교 또는 경인중학교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 및 통학거리 등은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의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청의 주관사항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 방법은 경기도 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군 내 학교 설립 추진 상황, 학생수 증감,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 배정학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건축심의 결과 및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 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983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설계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일반사항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 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동별로 차량 및 보도 이동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동의 주변 레벨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의 지하철과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3중에 해당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등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 0.202g입니다. • 아파트(주거동)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구조(내력벽식구조)를 적용하였고, 지하주차장 구조는 철근콘크리트(RC 및 PC) 라멘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 내의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개사가 공동수급의 형식으로 시공하여 디자인 및 브랜드, 색상 등 공동수급의 구성원의 개별사 디자인 사용이 불가하며, 추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또는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둘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어린이공원, 녹지 및 기부채납 부지로 단지 내 도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시설물, 건물, 어린이공원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구역 외 도로 설치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녹지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기반 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실시 계획(변경) 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및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분양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 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조경시설물, 야간조명 및 외벽 로고설치 등의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단지 주변의 레벨 차이로 인해 옹벽, 경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간섭,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보도의 선형, 재질, 경사, 레벨, 단차 등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계약전 반드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이후 시행자와 시공자의 협의 및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및 개요, 마감재, 조경 등의 일부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세대는 유리난간 특성상 이사시 사다리차 운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사인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 공사 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옹벽블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주동에 설치되는 BI 사인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추후 설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일반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생활지원센터),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생활지원센터)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은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천장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 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생활지원센터)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제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 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거나, 동 하부 조경공간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의 환경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에 빗물저수조, 정화조(위치는 실제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동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은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냄새 피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에 설치되는 재활용창고의 경우, 입주인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장 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없음. 이로 인해 근린생활시설별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근린생활시설별 진입로 및 전면 공간의 폭,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와의 레벨 차 등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 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상품성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동의서가 장구될 예정이며, 수분양자의 동의 후 인허가를 거쳐 변경 될 예정입니다. • 세대창고는 각 동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101동 PIT층 작은도서관 옆에 통합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별로 이동거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위치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107,106동과 인접한 주출입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주동의 저층 세대에는 빛, 소음, 환경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지 내부에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조정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의 면적 증감 및 설치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1의 분리수거함은 필터 하부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2의 분리수거함은 보행동선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출입 근방에 위치한 102동, 103동, 104동, 107동의 지상층 일부 세대는 주차장 차량 진입동선으로 계획되어 차량소음, 진출입차량 빔공해, 출차경고등 및 소음 등이 발생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세대별로 주차 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주차 위치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팬, D/A)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설치되는 세대창고의 배정 및 관리는 준공 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동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층에서 각동 동 출입구로 접근되는 차로에 한하여 유효높이 2.7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의 일반 차로는 2.3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음. 또한, 주차면의 상부는 일부 구간에서는 차로의 높이보다 낮을 수 있으니 (법적기준 2.1m) 높은 차고의 차량의 경우 주차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2층에서 이동하나 104동, 107동 일부 구간에서는 택배차가 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구간은 안내판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동출입구와 떨어져있어 택배차 진입이 불필요한 구간입니다.
아파트 주동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외벽 마감은 마감 재료의 색상, 적용 비율 및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저층부 3개층의 외벽은 지정 석재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허가, 현장 여건 및

상품성/시공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 근처/지상부에는 지하주차장 급배기를 위한 환기창(D.A)가 설치될 수 있음. 이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는 정화조 /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환기창(배기덕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에서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 별도의 용도로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는 인근동(109동, 110동)의 공용부분을 통해 최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는 건물 높이가 낮은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에 냄새 영향을 줄 수 있어, 아파트 공용부분을 이용하여 최상층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수경시설,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동배치상 생활폐기물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마감 및 상부 물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 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옥상 구조물 상부 및 내부에는 별도 도장 마감이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 부재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장식물의 높이 및 사이즈와 태양광 패널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시설의 통합 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하부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및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이동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동별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세대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에 제연실(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옥상층(103동, 105동, 106동, 109동)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가, 옥상층(103동, 105동, 106동, 109동), 지하2층 PIT(101동), 동통신실(102동, 108동), 환풍에는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측벽 포함)에 의장용 구조물, 위생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 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 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 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 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유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6동 앞 외부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근 동주민들의 소음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6동, 109동 5호세대(59B타입)의 침실3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점점사다리의 경우 추후 시공 시 내부 점점사다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외벽 마감은 마감 재료의 색상, 적용 비율 및 디자인은 상품성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동의서가 징구될 예정이며, 수분양자의 동의 후 인허가를 거쳐 변경 될 예정입니다.
단지배치/조경	• 출입구 근방에 설계된 주동의 경우 소음 및 분진, 및 차량 헤드라이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차량출입표시기에 의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조망권이 일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7동 201호, 301호 세대의 다용도실, 주방 등에서 주출입구 문주의 세대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도로 및 차량 이동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성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 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 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모든 공용시설(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생활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지하주차장 등)은 입주민과 공동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 및 분양아파트 구분없이 계획되었습니다. • 상기 배치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외부계단실, 외부E/V실, 주차출입구, DA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및 환기창, 생활폐기물 보관소, 가스정압기실 등 단지 내 시설(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 및 시설 사이의 경계 담장 및 펜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 난간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안전 매트 설치구역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거, 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식재 및 저층 세대 차폐 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 소음, 빗공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 특성 및 창호, 난간 사양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지하주차장 이용 시 지하주차장 충고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 면적 및 식재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조경 시설물, 각종 외부 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건물, 녹지, 도로, 학교,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 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설치 시)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대지경계 주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입주 시 지상에 전신주 및 전선이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 전후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정화조 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저층 세대는 옥외에 설치된 놀이/휴게/운동/수경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 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 마감, 조경, 창호 형태(유리난간 등),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 시 이 경우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E/V 대수 및 사양은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계단의 경우 추후 E/V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공통	• 동일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 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 가능한 유상 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 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 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 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 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배수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 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 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론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됩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상품성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동의서가 징구될 예정이며, 수분양자의 동의 후 인허가를 거쳐 변경 될 예정입니다. • 다용도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 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 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 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은 베인(문양)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매가 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 몰딩은 하자 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 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 바랍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템 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 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있으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 사이즈, 하드웨어, 유리 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 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플랩도어는 상부 이격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상부 후드 배관이 노출되거나 수납장 상부에 가림용 커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조합세대와 일반분양 세대의 마감재가 일부 상이하며, 품목 및 수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 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개임이 발생하는 코너 부위에 손개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미설치 시 해당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전기 / 설비	•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위에 건조기 설치 시 창문 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의 욕실 배관은 당해층 벽면(젠다이) 내부에 설치되는 층상벽면배관방식으로 시공되므로, 추후 유지보수를 위해 벽면 마감재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의 욕실 천정 내에는 상부층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어 상부 세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 세대 욕실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 발코니, 일부 싱크대 하부 공간등은 욕실 난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기 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설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 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 헤드 및 욕실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풍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 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AS를 위해 보일러 정면에 설치된 세탁기 및 건조기의 해체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연도 및 가스배관이 다용도실을 관통하여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소음, 진동이 인접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 환기 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빗물저수조, 정화조,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 가동 및 주기적 시험 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빗물저수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면적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관련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 미설치) •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49타입 이하 세대의 주방,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법규에 따라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렌지후드의 설치 높이, 주방가구 상부장 수납 공간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 배수배관을 위한 발코니 입상 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필요 시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 돌출물(DA)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 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 설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2층 하부 PIT층에 제연팬룸 환기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 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실, 방재실 등)의 실외기가 아파트 2층 하부 PIT층, 시설 옥상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정화조, 빗물저류조, 영구 배수시스템 등의 입주 후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별 아파트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 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지하층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펌프실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 시 인접한 세대 및 호실은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별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 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의 임의 조정 및 불법 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

	• 옵션 유무에 상관없이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 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욕조 하부, 샤워실 바닥은 난방 미적용, 드레스룸, 팬트리의 시스템 가구쪽은 난방이 미적용될 수 있으며 코일 피치 간격은 거실/침실과 다름)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 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 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발코니 바닥 배수구는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봉수파괴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주는 등 입주자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 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 세대는 세대별 외벽에 주방/욕실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9㎡ 이상 각 세대 외부에는 대피공간(살리고)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 내 조명밀도 및 조도가 일반 공공주택과 상이합니다. • 조명밀도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발코니	• 발코니 외벽/측벽/세대 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 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 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실외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 시 하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나 추후 완강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샷시,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기에 면한 실의 경우 발코니가 삭제 또는 축소된 타입은 단열재 설치로 세대 내부로 일부 벽면이 돌출될 수 있으며, 해당 발코니가 삭제되어 확장이 되지 않는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발코니 유무를 확인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 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 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또는 유상 옵션 선택 유무 등에 따라 설치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창호 유리사양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 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거실, 침실1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이중창이 설치되며,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한쪽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다른 한쪽은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홈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국립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 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 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택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X 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등·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골프클럽, GX룸, 공유오피스, 독서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 구획 높이
2.7m 이상	2.3m 이상 (택배차량 차로 2.7m 이상)	2.3m 이상

※ 지하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0.202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스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2 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된 사항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5-101-0001300호	사천구십사억구천오백사십오만원정 (₩409,495,4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약관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약관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공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약관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이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66-9009)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 공 사
상호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33, 4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 4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법인등록번호	250171-0030591	110111-2137895	110111-2153015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건본주택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번지					
현장위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운영시간	오전 10:00 ~ 오후 18:00					
분양문의	02-6116-8383					
주요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2025.05.19.(월)	2025.05.20.(화)	2025.05.21.(수)	2025.05.27.(화)	2025.05.29.(목) ~ 2025.06.07.(토)	2025.06.09.(월) ~ 2025.06.11.(수)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b/2025/gocheok/					

※ 본 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건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만차 시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